

의안번호	제 157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
조례안

발 의 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11월 22일

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1월 22일

발 의 자 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,
박지현

1. 제안 이유

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라.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마. 협조 및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- 호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

라. 비용추계: 붙임

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이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, 설비,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)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(이하 “시설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.

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.

제4조(시설협회의 사업 등)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2.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·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3.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
4.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
5.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·연구·지원사업
6.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협조 및 지원) 시설협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청소년활동 진흥법 (시행 2020. 11. 20.)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수련시설

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
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
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
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편의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·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제40조(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) ①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(이하 “시설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2. 청소년지도자의 연수·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3.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
4.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·연구·지원사업
5.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

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1조(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)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및 운영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 시설협회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사업비 등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시설협회의 사업 등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3년~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, '22년 추진 사업 기준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업을 추계

나. 추계결과 : 연간 10,000천원, 향후 5년간 50,000천원 소요

-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: 10,000천원 × 1식 = 10,000천원
 - '22년 추진 사업비 기준하여 추계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 : 붙임참조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사업	5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

6. 작성자 :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-						
세 출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사업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재원 조달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의 존 재 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 체 수 입	소 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지방세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						